

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-	------	----

형식승인 []	변경승인 []	예비형식승인 []
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

① 제출인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	
	상호(제조·수입사 명칭)	주소 (전화번호:)	
② 대상 측정기기	제조사/제조국	형식(모델명)	운용프로그램(버전 등)

③ 점검 항목	④ 점검 결과
1. 대상 측정기기의 사용 과정에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·변수(이하 “상수·변수”라 한다)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 전후의 상태와 변경일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로그기록이 생성된다.	예 [] 아니오 []
2. 대상 측정기기에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 제1호나목 또는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점검인이 제출하는 ‘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’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 기능이 없다.	예 [] 아니오 []
3. 대상 측정기기에는 상수·변수나 측정결과를 정상적인 교정 외의 방법으로 임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기능·장치가 없다.	예 [] 아니오 []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제1호나목[], 같은 항 제2호나목[] 또는 제6조의2제1항제3호[]에 따라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: (서명 또는 인)

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

비 고

- ①의 제출인은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기 위해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·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·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,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.
- ②의 대상 측정기기는 제출인이 형식승인·변경승인 또는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측정기기를 말합니다.
- ②의 운용프로그램(버전 등)란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4호 괄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③의 점검 항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④의 점검 결과로 아니오[]에 표시합니다.